https://www.cju.ac.kr

2021

CHEONGJU UNIVERSITY REPORT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교원을 위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학생상담 대응 매뉴얼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

목 차

1. 도움을 주기 위한 기본 원칙

2. 도움을 줄 때 유의해야 할 행동

3.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4.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5. 상담준비와 진행

6. 사건해결절차 안내

7.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 확인

8. 2차 피해의 이해와 예방

9. 피해자 보호조치

부록. 실전 체크리스트

1. 도움을 주기 위한 기본 원칙

1) 교수님의 역할과 직책을 명확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교수님의 역할은 학생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역할'임을 명확히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직책과 역할을 본인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피해자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발생한 학생 간의 성희롱 사건의 경우, 교수님은 교수자의 역할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직을 맡은 경우, 관리 책임을 맡은 당사자로서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해당 사건을 학생종합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 보직(학과장, 센터장, 부서장, 학교 각종 위원회 위원),

피해자와 나의 관계(지도제자, 수강생, 학과 학생, 동아리 지도 학생 등)

2) 교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니다.

교수님이 맡은 역할과 직책으로 인하여, 사건을 공식화해야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직책이나 역할에 따른 명분 없이 임의로 학생, 직원, 교원을 따로 불러 상황에 관해 묻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이들과 사건에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시고 이를 사전에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개별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학과 차원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교내 양성평등상담소 연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사결정을 지지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세요.

피해자가 교수님에게 이야기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와 이야기해준 것에 대하여 격려해주시고, 학생이 현명하고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수님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기보다 사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학내 담당 부서(양성평등상담소),
경찰서(112 전화신고 및 민원실 방문상담),
국가인권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교육부 및 정부 부처 인터넷 온라인 신고센터 등

4) 인지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신입생 가운데 이 연령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저학년 상담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학교 담당 기구와 상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상담을 하고 정보를 주기에 앞서, 교수님의 신고의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학내 업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교수님께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혹시나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2. 도움을 줄 때 유의해야 할 행동

1)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려 하지 말아 주세요.

간혹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우려되는 마음에 사건을 대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2) 확실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 주세요.

간혹 학생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학생이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세요.

3)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게~했어야지’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렇게 반응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학생을 탓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학생은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학칙이나 법률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시해 놓은 바와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1)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떤 사건에 관해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공동체(학과, 동아리 등) 내에서 공론화되거나 소문으로 떠돌면서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성원들(학과 학생들 등)에게 누구라도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는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 알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덧붙여 사건해결절차에 대한 안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공간 분리 방법에 대한 안내, 피해자 심리상담 안내, 사건에 대하여 면접상담 권유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피해자가 자신을 밝혔을 때

교수님이 발생한 사건의 피해당사자에게 사건 상담 안내 메일을 보내어 피해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더불어 학교 공동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안내, 학내 상담기구(양성평등상담소를 하고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3) 제3자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건의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거나, 교수님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님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제3자와 의논해 보고 피해자가 교수님이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교수님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상담 안내 내용을 제3자에게 전하여 제3자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1)에 따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 2)와 3)의 예시에 따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인터넷에 사건이 먼저 알려진 경우, 제3자로부터 재생산되는 언행과 피해자 신상 공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찾아내거나 사건을 급하게 해결하려는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지원 안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합니다.

4.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이 경험한 피해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건이 공론화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교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학내에 설치된 담당 부서(양성평등상담소)의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어 있거나 신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답변의 예
"혹시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양성평등상담소와 직접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바로 신고하는 것을 원한다면 양성평등상담소와 약속을 미리 정해줄 수도 있고, 바로 양성평등상담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나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가도 괜찮아요. 내가 양성평등상담소에 미리 말해 둘 수도 있고요.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담 약속을 정할 때는 상담시간, 상담 장소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시간을 정할 때 시작하는 시각과 마쳐야 하는 시각까지 미리 알려준다면 학생은 주어진 시간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담 장소에 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미리 알려주어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는 것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때때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자 누군가를 오도록 해 놓고 정작 학생에게 미리 말해두지 않아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담 약속을 잡을 때는 상담 요청자에게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장소와 배석자 등을 정할 때 원하는 장소, 배석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장소로 정합니다. 이때 상담 사실 자체가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연락받았을 경우 답변의 예
“(사건이 미리 공론화되어 있는 경우) 혹시 나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양성평등상담소(학내 담당 부서)의 전문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양성평등상담소 전문상담사와 내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으니 가장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이야기해주어요.”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털어놔 주어서 고마워요. 이번 주 가능한 시간은 ○요일 ○○부터 ○○까지인데, 이때 시간이 괜찮다면 연구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때 친구/동료와 같이 오고 싶다면 미리 이메일로 이야기해주어요. 연구실에 조교가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여 연구실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학교 상담실이나 ◇◇학생(피해자)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다른 곳을 알려주면 그곳으로 방문하게 할게요. 만약 사건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라면 양성평등상담소(학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해야 해요. 그런 경우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가도록 할게요”

5. 상담 준비와 진행

피해자를 만나면 우선적으로 상담의 목적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담의 목적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것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상황에서 상담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좀 일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라거나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담을 시작하기 전 명확히 하고 싶다면, *'혹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끝내야 할 시각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가능한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야기하는 중간에 상담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상담을 서둘러 마쳤다거나 이야기를 듣다 곤란하여 이야기를 중단시켰다와 같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수님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교수님께 이야기함으로써 '학교에 신고하였다.'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학교 측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교수님한테만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했는데, 학과회의에서 논의되어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공식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역할과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상담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양성평등상담소(담당 부서)를 통해 학교가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안내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야기만을 털어놓기를 원한다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피해자가 교수님에게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교수님 개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며 신고 없이 상담만으로 개입하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보직이나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답변의 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와 나와 둘이 아는 내용이 될 것이고, 따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되거나 오늘 이후 ○○의 동의 없이 ××(가해 지목인)에게 조치가 취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털어놓아도 괜찮아.”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와 나와 둘이 나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우리 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만약 사건이 학과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과장○○○교수님과 학교에 보고가 되어야 할 수도 있어. 이후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공식적인 신고를 원하는지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때 원한다면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렴.”

6. 사건 해결 절차 안내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이야기를 털어 놔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싶은지,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 또는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사건해결절차로는 크게 학외 절차(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및 정부 부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학내 절차(양성평등상담소에 중재 요청, 조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징계 등), 개인적 해결(개인적으로 가해 행위자에게 잘못 인정과 사과받기, 공간 분리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약속받기)이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 시, 교수님은 가해 행위자가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피해자가 바라는 사항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학내 징계나 공식적인 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청주대학교「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고려하도록 설명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학외 해결을 막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원활히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이후에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01	피해신고 피해자, 제3자	02	접수 및 사전처리 결정 양성평등상담소	03	조사위원회 소집 양성평등상담소
04	사건조사 조사위원회	05	사건에 대한 의견 회부 조사위원회	06	징계 요청 발의 양성평등상담소
07	징계, 상담 및 교육 행위자				

7.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 확인

피해자가 사건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걱정하는 점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단기로 우려되는 상황들**(행위자와 마주치거나 협박당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경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졸업학점 또는 장학금 수혜의 영향, 신고 시 절차의 어려움 및 이후 평가에 대한 우려들 등)'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앞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적극적인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행위자의 공개사과나 사건의 공론화를 원하는 경우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해자와 함께 예측해봅니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해결방법으로 적절한지,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올 가능성은 없는지, 가해 행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2) 피해자가 당장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상담시간에 결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여러 가지 가능성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숙고할 시간을 갖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결정하게끔 안내합니다.

3) 교수님이 요청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없거나, 피해자도 아직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학내 상담기구(교내 양성평등상담소)를 안내하고 사건 해결 선택과 결정을 위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양성평등상담소에 연락하여 상담할 수도 있고, 교수님이 양성평등상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요청사항을 바로 처리하기 어려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함 등)에는 다음 상담 일정과 시간을 잡고 다음에 만나 의논하자고 말한 후 그날의 상담을 종료합니다. 차기 상담 일정을 정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피해자와 교수님 모두 상담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 사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만나야 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상담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2차 피해의 이해와 예방

첫 상담부터 교수님은 모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2차 피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 2차 피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 행위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2차 피해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감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주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상처받기 쉽고,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건으로 인한 1차 피해보다도 2차 피해에서 받은 상처가 더욱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 <u>주변인</u>에 의한 '2차 피해'와 예시

- 가해행위자 옹호와 주둔

"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학생인데,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

-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 및 사건 내용 노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트리거나 SNS 게시'

- 피해자 험담

"원래 문제 있어 보였잖아. 짧은 치마만 입더니, 그럴 줄 알았어."

- 피해자 비난

"걔가 꼬셨대. 그때 왜 도망가지 못했니? 왜 거부하지 못했니? 그 밤에 왜 나갔니?"

-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별일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

“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곤란해지니 일 키우지 마라.”,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다른 일로 힘드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

“가해 행위자 인생이 이 일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만큼 네가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 받을 거야.”

-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화해 시도

‘지도교수가 양측 사건 당사자를 함께 불러 나란히 앉혀놓고 화해하라고 함. 지도교수가 실험실에서 양측 사건 당사자의 자리를 옆에 붙여놓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

◈ <u>가해 행위자</u>에 의한 2차 피해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
-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하기
-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피해자 탓하기
- 지도교수 등 교수님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
-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기

◈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 피해 가중
- 명예훼손
- 심리적 상처 가중
- 신뢰 깨짐, 대인관계 두려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등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주기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 퍼트리지 않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소문이 퍼질 수 있음
- 교수님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요청하도록 안내하기
- 교수님은 가해 행위자에게 2차 가해(피해자 및 사건 관련인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동)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를 요청하기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책감 일으키는 말을 자제하기
- 가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 들지 않기
-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 학업능력, 성적 등으로 편견을 갖지 않기
-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하기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설령 걱정되더라도 자세히 묻지 않기

9. 피해자 보호조치

1) 비밀유지 의무

사건 내용과 당사자 신상정보가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유지를 요청한 후 이야기하도록 피해자에게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주변인에게 이야기했다면 주변인에게 "사건에 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른 주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당부합니다. 가해 행위자에게도 비밀유지 요청을 하겠다고 안내합니다.

2) 접촉금지 및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게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접촉금지와 업무/공간 분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위자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임시 공간 분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중재나 조사절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중재 서약 또는 조사 후 결정과 권고에서 공간 분리 기간과 방법 등 구체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업, 동아리, 과방, 자주 드나드는 건물 등을 파악하고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학과나 동아리의 공식적인 행사(개강총회, 종강총회, 학과행사, MT 등)에 행위자가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 등 SNS상에서도 분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공간 분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함께 다시 상의해봅니다.

사건 양 당사자가 모두 같은 공동체에 있거나 공동체 내에서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등 공동체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내 양성평등상담소와 의논하여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0), 대학 교수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김영희, 김진희, 노정민, 김현정 (2019).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개정판).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노정민, 김현정, 이경희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2012).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강캠퍼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8). 관리자(보직교수, 지도교수, 조교 등)를 위한 대학 성폭력 사건 상담 매뉴얼
윤덕경, 이미정, 최윤정, 장희영 (2018).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 교육부.

부록. 실전 체크리스트

1단계: 상담 요청 및 상담 약속 정하기

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신고 가능성을 염두 해야 하는가?

↓ 네

② 나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요→ 담당자에게 보낼 것을 안내 → 상담 종결

↓ 네

③ 상담 약속

✓ 상담 약속과 시간	
1. 상담 가능 시간(시작시각, 종료시각)을 정확히 안내하였는가?	
2. 상담 장소는 교수 연구실 및 상담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곳인가?	
3. 상담 장소에 누가 있을 것인지 안내하였고, 동행인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였는가?	
✓ 상담준비	
1. 상담을 오는 사람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있거나, 원치 않았던 사람이 없도록 하였는가?	
2. 안내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 부서나 담당자 연락처를 인지하고 있는가?	

MEMO

2단계: 상담(이야기 들어주기)의 진행

① 상담목적을 파악한다.

↓

② 상담 가능한 시간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상담으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④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파악한다.

↓ (이야기를 듣는다)

⑤ 이야기를 듣는 도중 이야기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중간에 멈추어야 하는 경우.

나와 관계있는 사람이 가해자로 언급되는가?	이야기 중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는가?	이야기 중 상담하는 학생의 감정이 북받쳐 진행이 어려워지는가?	이야기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	↓	↓	↓

MEMO

이야기를 멈추고,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지 묻는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부연으로 질문하여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잠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물이나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그건 누가 잘못했구나.' 혹은 '그건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삼간다. 학생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러 온 것이지, 어떠한 판단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⑥ 학생이 원하는 방향에 관해 확인한다.

신고하기를 원하는가?	털어놓기만을 원하는가?	개입을 원하는가?
↓	↓	↓
신고하려면 담당 부서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안내한다.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는 경우, 교수 개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며, 신고 없이 상담만으로 개입하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음을 안내한다.

3단계: 해결 방안 모색

①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

② 현재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싶은지 물어본다.

↓

원하는 요청사항이 있고 명확한 경우.	요청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없거나, 학생도 아직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 사건이 내 수업시간에 발생하였거나, 개입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수용할 수 있지만, 지목된 학생이나 교원 또는 직원을 불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다면, 바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한다.	↓ 전문상담부서나 담당 부서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다른 부서를 추천하기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MEMO

확인 1.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인가?

✓긴급 지원에 관한 판단	
- 강간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72시간 이내인가? (강간은 실제 성교가 발생한 경우이며, 성기가 삽입되지 않더라도 유사 성행위나 기타 물체를 이용하여 성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 강간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 이내인가? 혹은 어떠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가?	
- 상담 시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죽고 싶다.', '제가 죽으면 다 끝날까요?')을 사용하거나, 자살 및 자해시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는가?	
-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거나 스토킹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는가?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경찰(112)과 학내 양성평등상담소(또는 학생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양성평등상담소(또는 학생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미리 잡아주고,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확인 2. 어떤 우려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있는가?

단기적인 우려사항이 있는가?	네 →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장기적인 우려사항이 있는가?	네 →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음을 알린다.

↓

③ 내가 생각나는 우려사항을 모두 전달하였는가?

↓

④ 학내에 전문기관과 담당자가 있음을 안내한다.

↓

⑤ 학교 외에도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⑥ 나와 추가 상담이 필요한가? 네 → 다음 상담 일정과 시간을 정하고 상담을 종료한다.

MEMO

↓

⑦ 학내 기관에 상담이 필요한가? 네 → 학내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한다.

↓

⑧ 향후 진행 상황에 관해 물어보아도 괜찮겠냐고 동의를 구한다.

↓

⑨ 학생이 동의하였는가? 네 → 상담 이후 팔로우 업을 진행한다.

↓

⑩ 상담을 종료한다.

4단계: 상담 이후 팔로우 업

① 사전에 학생의 동의를 얻었는가? 아니요 →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예방방안 수립

↓ 네

② 학생에게 연락하여 진행을 물어보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청주대학교
학생종합상담센터